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2011년 9월 pp.215~273
한국세무학회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

배수진** · 심태섭***

<요 약>

실험연구는 행동회계연구에서 납세자의 조세순응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회계연구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연구들의 주제 및 설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이용한 조세순응연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경제적 요인은 주로 납세자들의 세후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수를 의미하며, 조세 제도적 요인(제재,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 보상, 및 조세시스템)과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소득수준과 소득원천)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비경제적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요인(태도 및 인지),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권고)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변수 중 기존연구에서는 특정 변수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량이나 정보 공개 방식이 다를 경우 납세자들의 반응을 검증하는 연구 혹은 세무조사 후 납세자의 세무신고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정보공개 혹은 사후관리 관련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윤리적 권고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및 재정리한 것입니다.

** 중앙대학교 강의전담교수, sjpae@cau.ac.kr, 031-670-4667,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tsshim@uos.ac.kr, 02-2210-5386, 교신저자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비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세순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납세의사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세무신고의사결정, 실험연구, 조세순응, 행동회계연구

I. 서 론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조세순응(tax compliance)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행 연구에서는 세무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판단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러한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경제적 변수¹⁾에 한정되었으나 비경제적 변수로도 점차 확대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일정한 특성을 갖는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는데(Jackson and Milliron 1987 ; Roberts 1998 ; Fischer et al. 1992 ; Bonner 2008), 이러한 연구의 분류는 세무신고와 관련된 납세자의 판단이 복잡한 인지처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납세자의 판단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 혹은 실험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초기 조세순응 연구에서 납세자의 행동을 경제적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적 연구는 납세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많은 요인을 모두 통합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²⁾ 또한 실증적 연구는 조세순응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개개인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³⁾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실험연구를 들 수 있다. 실험연구는 연구자가 한 개 이상의 관심변수(처리변수)를 통제하거나 조작(manipulation)한 실험상황에서, 실험참여자의 판단과 행동(종속변수)에 대한 관찰

1)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은 주로 납세자들의 세후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수를 의미한다.

2) 이론적 연구에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는 적발이나 처벌과 같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조세회피를 통해 자신의 효용(benefit)을 가증시키는 행위, 즉 개인의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위로 가정한다. 조세순응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학적 접근법들은 이러한 기본구조를 가진다(Cowell 1990).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조세회피에 관계된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경험적이거나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Lewis 1982).

3) 실제로 발생된 현상으로부터 획득된 계량적 데이터는 연구주제에 대해 신뢰성이 없을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변화, 특성 혹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Alm and Jacobson 2007).

을 통해 처리변수의 효과를 분석해 내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조세순응 관련연구에서 실험방법을 이용할 경우, 연구자는 실험참여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하고 개별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조세순응행위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다.⁴⁾ 이와 같이 실험방법은 연구자들이 납세자가 직면한 제도나 유인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변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험방법은 모든 설계방법 중 가장 강한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Trochim 2007, 264).⁵⁾ 특히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행동 회계연구(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에서는 특히 납세자의 조세순응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Alm 1991).⁶⁾ 따라서 조세순응과 관련된 행동회계연구를 위해 실험방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납세자의 판단 및 의사결정 관련 연구가 세무회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행동회계연구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계학 분야 뿐 아니라 경제학 분야에서 실험방법을 이용한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를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Bonner(2008) 및 최기호와 심태섭(2011)은 주로 회계학 분야의 연구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실증하는 실험경제학⁷⁾이 일찍이 확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무정책과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회계학 분야의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4) 즉, 자연현상에서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사전-사후 분석(ex ante-ex post analysis)), 특정현상의 발생 원인과 방법에 대한 분석(인과관계분석)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추가로 실험연구는 기술적 질문(규범적 질문) 형태의 설계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다양화할 수 있다.

5) 반면, 실험연구는 과업, 상황설정, 조작변수 및 횟수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실험연구는 실험참여자의 대표성과 실험실 내에서 관련된 요인들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기도 한다(Alm and Jacobson, 2007). 이러한 실험연구가 갖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Antonides(1991)는 실험참여자의 무작위할당(random assignment),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이용 및 사전실험(pre-test)과 같은 설계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6) 조세순응연구 외에, Libby et al.(2002)는 재무회계 주제를 검증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 실험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행동경제학 및 실험경제학 관련 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Sprinkle(2003)은 현재 관리회계연구를 체계화하고 통합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리회계정보의 의사결정 영향과 의사결정 용이성을 이용하여 관리회계분야에서 실험연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7) 실험경제학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행위의 이론적 예측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실내 미시경제 환경을 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통제된 실험을 주요 검증방법론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회계학 분야 뿐 아니라 경제학 분야의 연구도 같이 정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Roberts(1998)는 세무업무관련자(tax accountants)⁸⁾의 세무신고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으나, 주 분석대상은 납세자 개인 보다는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또한 Bonner(2008) 역시 회계 관련 여러 전문가, 특히 회계감사인의 과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⁹⁾ 반면 본 연구는 개인 납세자의 조세순응 행동에 한정하여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관련요인에 속하는 변수를 폭넓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가 있다. Roberts(1998)는 세무업무관련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관련변수, 환경관련변수 및 과업관련변수로 분류하였다. 최기호와 심태섭(2011)은 Bonner(2008)가 제시한 기존연구 정리의 틀을 이용하여 2000년대 이후 세무관련 행동회계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들 연구는 개인, 환경 및 과업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관련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주로 개인납세자를 둘러싼 환경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Roberts(1998)가 제시한 환경관련요인은 국세청의 정책(IRS position), 고객특성(client characteristics), 기업의 기대(firm expectations)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분석되지 않은 환경관련요인의 세부변수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여 정리함으로써 세무당국에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상의 차이점을 유지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개인납세자의 납세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경제적 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과 납세자의 조세순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에서는 통제된 실험상황을 통해 비경제적 요인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세부적인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 등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¹⁰⁾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이용한 조세순응연

8) Roberts(1998)는 연구대상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아닌 세무대리인, 납세자 및 세무 관련 전공 학생을 포함하였다.

9) 이러한 형태의 세무분야 연구는 최기호와 심태섭(2011)에 정리되어 있다.

10)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행동연구와 관련된 모든 회계분야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행동연구는 회계학의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하위 분야의 범위를 망라하고 있다. 추가로 이러한 분야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법(예를 들면, 설문조사 및 질문법, 인터뷰, 무작위 임상(randomized trials), 직접 관찰법(direct

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은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제적·비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1. 조세 제도적 요인 가. 제재 • 세금에 대한 부담 • 적발 • 처벌 나.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 • 정보공개 • 공식적·비공식적 정보 다. 보상 • 금전적·비금전적 혜택 라. 조세시스템 • 복잡성 • 불확실성	1. 개인적 요인 가. 인구통계적 특성 2. 심리적 요인 가. 태도 • 윤리적 태도 나. 인지 • 공정성 3. 사회·문화적 요인 가. 사회적 가치관 • 사회·문화·국가 간 차이 나. 윤리적 권고
2.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 가. 소득수준 나. 소득원천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은 주로 납세자들의 세후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수를 의미한다. 반면, 비경제적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태도나 인지, 가치관 등의 변수를 의미한다. 각 요인에 포함되는 측정항목들은 실험 내에서 다양한 변수로 조작되어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리·요약하고, 제Ⅲ장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리·요약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선행연구

observations), 기술적 방법, 실험실 및 현장실험, 표준검사(standardized tests),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es), 통계적 모델링(statistical modeling), 의사결정자 및 집단의 광범위한 평가)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Callahan et al. 2006), 본 연구는 실험연구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의 정리내용을 바탕으로, 행동회계연구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요구되는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Roberts(1998)는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환경관련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경제적 요인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은 과세당국의 조세정책, 조세구조 및 시스템을 의미하는 조세 제도적 요인과, 납세자 개개인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차별적인 특정한 경제적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을 포함한다.

1. 조세 제도적 요인

가. 제재 : 세금에 대한 부담, 적발 및 처벌

(1) 의미

대부분의 조세순응 관련 이론적 연구는 Becker(1968)가 제시한 범죄 경제학(economics-of-crime)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납세자들이 적발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당국은 주로 납세자에 대한 제재를 이용하여 조세순응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도입해 왔다. 더불어 조세순응 의사결정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관심변수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세율, 적발가능성을 의미하는 세무조사가능성 및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적발확률, 그리고 적발로 인한 처벌을 의미하는 가산세율 등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연구되어 왔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의 측정

(가) 세금에 대한 부담 : 세율

이론적 연구와는 달리 많은 실험연구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즉, 세율(tax rate)이 증가할 때 조세순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Friedland et al. 1978 ; Baldry 1987 ; Benjamini and Maital 1985 ; Alm et al. 1992a).¹¹⁾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세율의

11) 대표적인 이론적 연구인 Allingham and Sandmo(1972)는 세율과 신고소득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율의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대체효과(substitute effect)가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득효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

증가로 인해 납부세액이 증가되어, 납세자의 가치분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Alm et al.(1995)은 세율이 증가할 때 보고소득이 증가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율과 보고소득과의 관계는 납세자에게 다른 상황변수가 주어지거나 다른 변수들(예를 들면, 위험선호도, 공정성 혹은 소득획득방법 등)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Beck et al.(1991)은 납세자를 위험선호도별로 분류하여, 위험회피형인 납세자인 경우 세율이 증가할 때 조세순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Moser et al.(1995)은 납세자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불공평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세율, 납세자의 공정성 인지 그리고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Boylan and Sprinkle(2001)은 납세자들의 소득획득방법(증여소득(endowed income)과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분류)과 세율변화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소득획득방법을 조작하기 위해 실험참여자가 일정금액을 증여받거나, 한 시간의 복잡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일정금액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분석결과 세율이 증가할 때, 증여소득을 획득한 경우 근로소득을 획득한 경우에 비해 보다 더 공격적인 세무보고 성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과 같은 정책 변수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이 소득획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이론과 실증분석연구에서 나타난 세율변화와 납세자의 조세순응과의 관계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상의 연구에서 실험 내 세율 변수의 조작은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 세율의 크기와 유사한 크기로 설정되어 이용되고 있다.

(나) 적발 : 세무조사가능성,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적발확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책일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해 온 정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세액이 적발될 확률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① 세무조사가능성

우선, 세무조사선정비율(audit rate) 혹은 세무조사확률(audit probability)과 관련된 연구결과, 현실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이러한 실

회피도가 감소하는 절대위험회피도(absolute risk aversion)를 가정할 때, 세율이 높아질수록 위험회피도가 감소하게 되어 탈세수준은 감소하게 된다(즉, 세율과 신고소득은 정(+)의 관계). 그러나 대체효과에 따르면, 세율의 증가는 납세자가 소득을 과소신고 할 때 얻는 이익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탈세수준이 증가하게 된다(즉, 세율과 신고소득은 부(-)의 관계).

제 확률 보다 자신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더 크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무조사확률이 증가할 때,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riedland et al. 1978 ; Beck et al. 1991 ; Alm et al. 1992a ; Alm et al. 1993).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당국의 세무조사비용의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비용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세무조사비용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무조사가능성은 실험 내에서 5%에서 90%까지¹²⁾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실에 비해¹³⁾ 매우 높은 확률로 조작되고 있다.

②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일부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audit scheme)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무작위추출방식(random method)은 조작된 각 집단에서 제출된 소득신고서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실험연구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다(Alm et al. 1992b ; Moser et al. 1995 ; Boylan and Sprinkle 2001 ; Kim et al. 2005). 실험 내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적용은 다양한 세무조사가능성을 설정하여, 번호가 표기된 주사위를 이용하여 해당 숫자의 실험참여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Wartick et al. 1999), 번호가 표기된 구슬(혹은 칩(chip))을 상자에 넣고 이를 뽑아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Beck et al. 1991 ; Moser et al. 1995 ; 심태섭 2008)을 주로 이용하였다.¹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둘째,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cut-off method)은 일정한 최저금액수준(cut-off level) 이하를 신고한 납세자를 세무조사 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금액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형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최저금액수준을 사전에 연구자(과세당국)가 설정한 연구로, Beck et al. (1992)은 Beck and Jung(1989a)이 제시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방식(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의 분석적 모형에 비체계적인 세무조사방식(무작위추출방식)을 추가하여, 두 가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험에서 최저금액수준은 각 실험집단에서 조작된 변수 값(parameter value)의 조합(combination)으로 산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과 같은 체계적인 세무조사방식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였다(less

12) Alm et al. (2009)(5%) 및 Beck et al.(1991)(90%)을 참조하시오.

13) 현실에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확률은 0.3% 미만의 낮은 확률을 보고하고 있다.

14)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작위추출방식 하에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이 엄격하게 동일한 기회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supportive).¹⁵⁾ 다음으로, 최저금액수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실험참여자의 신고소득에 따라 최저금액수준이 결정되도록 설계하기도 하였다(Collins and Plumlee 1991 ; 심태섭 2008). 심태섭(2011)은 Beck et al.(1992)과 같이 무작위추출방식과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을 실험에 이용하였는데,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의 경우 각 세션의 참여자가 신고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한 두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하에서 무작위추출방식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태섭(2005)은 이와 동일하게 가정한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하에서 세무조사가가능성을 확대할 경우,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세무조사가가능성을 증가시키면 과소신고 성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conditional method)은 납세자가 실제소득 대비 높은 소득을 신고하면 낮은 세무조사가가능성을 적용하고, 실제소득 대비 낮은 소득을 신고하면 높은 세무조사가가능성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신고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무조사확률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Collins and Plumlee(1991)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실험방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 후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하고 있다. Collins and Plumlee(1991)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세 가지 수준(무작위추출방식,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보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방식이 순수한 무작위추출방식 보다 과소신고 억제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¹⁶⁾ 이러한 결과는 세율이 낮고 가산세율이 높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Alm(1991)은 Collins and Plumlee(1991)의 연구에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연구나 실험 자체에서 고려하지 못한 전략적 세무조사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는 이론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당해 연도 신고분에 대한 미신고소득이 발견될 경우, 과거 또는 미래의 신고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lm et al.(1993)은 Collins and Plumlee(1991)가 제시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포함하되,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응용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무작위추출방식 외에 선정방식으로 최저금

15) 연구자들은 이 밖에 세무조사방법, 세율변화, 과세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납세자의 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6) Collins and Plumlee(1991)는 구체적으로 무작위추출방식,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의 순서로 과소신고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이때 무작위추출방식 하의 신고성실도는 나머지 두 방식 하의 신고성실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과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이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 보다 과소신고를 억제할 수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액신고자추출방식과 두 종류의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을 제시하였다.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은 두 종류(조건부차기세무조사방식,¹⁷⁾ 조건부전기세무조사방식¹⁸⁾)로 세분하여, 세무조사 결과가 미래와 과거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상황에서 연구결과는 실험참여자의 성실신고는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조건부전기세무조사방식, 조건부차기세무조사방식, 무작위추출방식의 순서로 나타나 체계적인 선정방식이 무작위추출방식에 비해 조세순응 유도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체계적인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조세순응률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nderson and Cuccia(2000)는 Collins and Plumlee(1991)의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을 응용하였는데, 세무조사가능성을 보고세액의 감소함수(decreasing function of the reported tax)로 설정하여, 탈루세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무조사가능성을 적용하도록 설계하기도 하였다. 국내연구로 배수진과 심태섭(2011)은 보고소득이 작을수록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세무조사가능성)이 커진다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선정방식을 실험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의 기본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이들은 선정방식의 공개여부를 실험설계에 포함하여 선정방식과 공개여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모두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에 비해 무작위추출방식에서 높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냈다.

③ 세무조사적발확률

세무조사적발확률(audit productivity)이란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 중 세무조사에 의하여 발견될 소득의 비율로, 세무조사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Alm and McKee(2006)는 세무조사적발확률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세무조사적발확률을 100%로 가정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적발확률을 65%와 100%로 가정하여 실험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적발확률이 65%인 경우 100%에 비해 약간 높은 순응률을 보고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높은 세무조사적발확률 자체만으로는 조세순

17) 조건부차기세무조사방식(CFA, Conditional Future Audit Rule)에서는 5%의 세무조사가능성에 따른 무작위추출방식을 적용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된 경우 미신고분이 적발되면 다음 2기간 동안 100%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그 후에는 5% 세무조사가능성을 적용한다. 반면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으나, 미신고분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 다음 2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즉, 이 방식은 미래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실험참여자의 신고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세무조사면제)이 포함되어 있다.

18) 조건부전기세무조사방식(CBA, Conditional Back Audit Rule)에서는 기본적으로 5% 무작위추출방식을 적용하여 세무조사대상이 되어, 미신고분이 적발된 경우, 이전 2기간을 소급하여 세무조사 한다. 이 경우 모든 미신고소득이 적발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반면 세무조사대상이 되었으나, 실험참여자가 모든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없다. 즉, 세무조사대상자는 현재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전 2기간 또한 세무조사 될 수 있다.

응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신 높은 조세순응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예측을 증대시키는 것이 요구됨을 설명하였다.

④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점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는데, Alm and McKee(2006)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과 조세순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세무신고 전에 세무조사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audit before), 실험참여자의 순응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

연구자들은 세무조사 후 납세자들의 보고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Spicer and Hero(1985)와 Webley(1987)는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post-audit complia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실험참여자들은 이후 세무신고에서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처벌 : 가산세율

가산세율 정책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의 변화가 크지 않을지라도, 매우 높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Friedland et al. 1978 ; Beck et al. 1991 ; Alm et al. 1992a ; Alm et al. 1992b), 이론적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Friedland et al.(1978)은 높은 가산세율이 세무조사비용을 확대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과소신고 억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산세율의 증가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상(psychological rewards)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즉, 공격적 세무보고 성향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무당국은 벌금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uccia 1994).

실험에서 가산세율의 조작은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기준으로 조작되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세무신고에 적발될 확률과 이로 인한 처벌에 대한 기댓값을 고려하여 세무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 및 세무조사가능성과 같은 다른 재정적 변수(fiscal variable)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산세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요약 및 한계

납세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 가산세율, 세무조사가능성에 관한 실험 연구결과는 이론적 연구 및 실증적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세율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실험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적발과 관련하여 주로 세무조사에 대한 변수를 검증했는데, 대표적으로 세무조사가능성을 조사했다. 실험 내에서 이용되는 세무조사가능성은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세무조사가능성을 이용하고 있어, 세무조사가능성의 조세순응 효과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였

다. 19)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가능성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선행연구에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 및 세무조사적발확률과 같은 변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나. 납세 관련 정보 : 세무조사관련 정보(세무조사가능성, 세무조사대상자선정방식)의 공개, 공식적·비공식적 정보, 납세자간 의사소통²⁰⁾

(1) 의미

일부 연구에서는 조세행정 및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조세순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측면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였다. 세무조사는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에 대한 직접적 조세회피 억제효과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간접적 억제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가능성의 변화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 외의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Dubin et al. 1990 ; Dubin 2004 ; Tauchen et al. 1989).²¹⁾ 이와 같이 납세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정책은 간접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효과의 크기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정보제공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 19) Outslay(1995)는 조작변수의 수준이 비현실적일 경우 외적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할 경우 실험참여자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여 내적타당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0) 납세자간 의사소통은 납세자의 동료집단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동료집단은 친구, 친인척, 직장동료 등 대개 납세자의 주변인을 의미한다. 이는 동료집단 내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승인되거나 비승인 되는 것과 관련하여,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판단과 기대를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납세자의 사회적 환경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류한 비경제적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될 수 있다. 단, 이는 실험설계에서 변수의 조작시, 처리집단 내의 실험참여자 간 정보 공유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본 절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 21)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연구 뿐 아니라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Quiggin(1993)은 순위 의존기대효용모형(rank-dependent expected utility model)에 의한 개인을 가정하여 기존의 기대효용모형을 수정하여 제시한바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납세자는 적발이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확률을 확대시키고, 성공적으로 탈세할 확률을 축소시켜 인식하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가 더 높은 순응행위를 유도한다고 보았다. 즉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세무조사위험을 높게 인식하여 조세순응이 보다 증가하게 된다.

Spicer and Thomas(1982)는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Alm et al.(1992c)은 세무조사 정보의 제공이 공격적 보고를 증가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Slemrod et al.(2001)은 미네소타(Minnesota)주의 과세당국이 실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능성 증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²²⁾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의 신고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세무조사가능성에 관한 과세당국의 공식적 정보가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실례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순응률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Alm and McKee(2006)는 세무조사대상 여부를 미리 공지하는 경우(known audit), 조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 될 것이라고 사전에 공지한 실험참여자의 순응률은 증가한 반면, 세무조사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한 실험참여자의 순응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순응률은 감소하였다. 또한 Hasseldine et al.(2007)은 납세자에게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우편과 가산세와 같은 제재의 내용이 담긴 우편을 발송하였다. 연구결과, 실질적인 제재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우편을 제공한 경우 신고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신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김형준과 현진권(2004)은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두 변수의 공개 형태를 세 가지(비공개, 일부 공개, 모두 공개)로 조작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비율이나 탈세에 대한 정보 모두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정확한 세무조사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차길녕과 도상호(2006)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안내문에 포함된 평균신고소득률에 대한 정보와 납세자의 신고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분석결과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과소신고)한 경우, 평균신고소득률을 제시하면 더 낮은(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Alm et al.(2009)은 세무조사의 빈도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의 보급 유형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실험에서 세무조사 정책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식적 정보(official information)와 비공식적 정보(unofficial information)의 두 가지 형태로 조작하였다. 우선 공식적 정보는 세무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사전 세무조사가능성(공개, 비공

22) 연구자들은 1995년 미네소타(Minnesota)주에서 실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식적 정보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treatment group)은 무작위로 1,724명의 납세자를 선택하여, 이들에게 이번 기에 제출할 세무신고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공식적인 우편을 발송하였다. 반면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 두 집단 간 신고소득 크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과 세무조사 결과(공개, 비공개)가 제공 혹은 미제공 되도록 측정하였으며, 비공식적 정보는 납세자(실험참여자) 간 이루어지는 의사소통(허용, 비허용)으로 측정되었다(6집단). 분석결과를 과세당국이 공표한 세무조사결과 및 실험참여자의 의사소통으로 획득한 정보의 효과는 과세당국이 세무신고 전에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과세당국이 사전에 세무조사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Alm et al.(2009)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포괄적 정보에 초점을 두었다면, 심태섭(2011)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식적 공개 발표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무작위추출방식,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에 대한 기준의 공개 여부(비공개, 공개)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과 같은 체계적인 세무조사 방법이 공개될 때,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공개정책은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요약 및 한계

과세당국은 제재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접근법은 보다 많은 제재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정책 이슈는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제재 관련 정보와 이것이 이 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 관련 정보(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와 조세순응과의 관련성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납세자들에게 전파되는 방식, 납세자들 사이에 전달되는 방식,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전파되는 다양한 정보내용 및 이러한 정보의 수준 등과 조세순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 보상 : 비금전적 혜택 및 금전적 혜택의 다양한 보상의 지급

(1) 의미

조세순응은 단순히 제재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orgler 2001, 2002). 그러나 많은 실험연구들은 세율이나 세무조사가능성과 같은 억제 요인(deterrence factor)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실험들은 주로 이러한 억제 요인들을 보다 강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Bosco and Mittone, 1997 ;

Torgler, 2001). 반면, 사회심리학자들(social psychologists)과 신경과학자들(neuroscientists)은 보상(reward)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와 구인효과(crowding in effect)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Frey 1997, Le Grand 2003). 이 이론은 적발과 같이 통제로 인식되는 외부간섭은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²³⁾를 몰아내는 경향(crowd out)을, 반면 지원(support)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는 내재동기를 몰아오는 경향(crowd in)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납세자의 내재동기는 정부의 정책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엄격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음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가 인지한다면 납세유리는 구인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임승차를 예방하고 공정성 및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납세유리를 유지하게 한다. 반면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 제공받는 보상의 형태는 지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조세유리를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Feld et al. 2006).

이에 따라 조세순응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실험연구에서 성실납세자는 실험집단에서 가장 높은 세액을 신고하거나, 100%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선정되도록 하였다.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조작은 금전적 형태의 보상(monetary reward)과 비금전적 형태의 보상(non-monetary reward)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결과는 보상의 제공이 조세순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Alm et al. 1992c ; Torgler 2003a),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심태섭 2004 ;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정책 전략에서 보상정책이 조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Alm et al.(1992c)은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긍정적 유인(positive inducement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의 형태를 네 가지로 조작하였는데, 세 가지는 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한 가지는 비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금전적 보상으로, 우선 현재와 이전 4개 라운드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실험참여자(100% 신고)에게 복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²⁴⁾ 두 번째로 성실하게 신고한 실험참여자의 경우, 고정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복권의 기대값과 동일한 보상을 지급하였다. 세 번째는 공공재를 가정하는 세션으로 실험집단의 전 구성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²⁵⁾ 그리고 네 번째 형태

23)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이끄는 내면상태를 의미한다(Reber 1995).

24) 복권은 1/25의 당첨 확률이 있으며, 당첨 금액은 전체 세션 중 실험참여자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25) 실험참여자의 잉여소득(surplus)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재는 주어진 기간에 각 그룹으로부터 징수된 세

인 비금전적 보상은 세무조사가능성을 감소시켜 주었다.²⁶⁾ 분석결과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의 수단은 조세순응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단,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상의 형태는 동일한 기대값을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된 보상이 조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rgler(2003a)는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세무조사가능성과 가산세율과 같은 전통적으로 검증되어 온 변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공공재, 도덕적 권고(moral suasion) 및 보상과 같은 기타 변수의 확대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때 보상은 실험참여자가 완전히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금전적 혜택을 지급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²⁷⁾ 검증 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의 혜택은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때, 조세순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 유인이 조세순응을 향상시키는 수단임을 제시한 Alm et al.(1992c)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성실납세자에 제공하는 보상과 납세자의 조세순응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연구로 심태섭(2005)은 국세청이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성실신고율 유도를 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성실납세자는 각 집단의 참여자 중 신고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1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혜택의 수준은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은 혜택이 없는 경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간의 다음 기간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납부세액의 10%)하여 주는 경우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독자적으로 납세자의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소신고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금의 합계에 두 배를 곱한 후, 그룹에 속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26) 첫 회 세무조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을 4%에서 2.7%로, 그 다음 세무조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을 2.7%에서 1.3%로 감소시켜 적용하도록 하였다.
- 27) 실험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3,000콜론을 지급)과 소득이 낮은 집단(1,500콜론을 지급)을 구별하여,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은 1,000콜론을 소득이 낮은 집단은 500콜론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이때, 1,000콜론(colones)=약 9달러(dollars)).
- 28) 심태섭(2004)은 세무대리업무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 및 성실납세자 혜택 등의 성실세무신고 유도정책이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비금전적 혜택과 금전적 혜택의 두 가지 수준으로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비금전적 혜택에는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로 포상, 향후 3년간 일체의 세무조사면제, 세무대리 업체의 세무사를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3년간 일반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을 포함하였다. 금전적 혜택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의 5%), 국민은행 VIP 고객으로 대출이자 1% 감면 혜택, 세무대리 업체의 세무사의 소득 계산시 성실신고세액공제의 금액을 모범세무대리인공제로 세액공제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실험상황을 현재 국세청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성실납세자 혜택 정책 자체가 성실납세의 유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세무조사와 세무대리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연구에서 보상 변수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은 납부한 세액의 크기에 비례하거나, 모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3) 요약 및 한계

보상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조세순응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다른 변수와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실납세자 혜택 정책이 가산세율 정책과 동시에 도입될 경우 납세자의 납세순응도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Falkinger and Walther(1991)의 연구모형²⁹⁾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실험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유사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성실납세자 혜택 정책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조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됨을 함축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금전적인 혜택과 비금전적인 혜택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보상의 제공에 대한 유용성 여부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근거(예를 들면, 납세자의 조세순응 유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의 종류와 수준과 같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라. 조세시스템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1) 의미

조세시스템은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후진적 조세시스템을 가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응도를 보고하고 있다. 조세시스템은 전술한 제재나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을 통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조세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lm(1991)은 세법의 불확실성은 세법의 부정확성 및 복잡성, 세무공무원의 정규교육 및 능력 부족, 처벌이나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한 납세자의 무지, 빈번한 세법개정, 세법개정이 진행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개

인에 대한 벌금 정책이 적절히 혼합되어 사용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29) Falkinger and Walther(1991)는 납세자에게 탈루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제재 정책인 가산세율과 보상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거나 확대시키면,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최적 기대효용수준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부는 동일한 기대세수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론적 연구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혼합된 벌금-보상 시스템(mixed penalty-reward system)이 납세자들의 조세순응과 정부의 세수(tax revenue) 유지에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인의 판단과 선택을 보다 다양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불확실한 소득세 정책은 개인의 모든 선택범위(예를 들면, 근로, 투자, 저축, 소비, 조세회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우선, 조세순응의사결정 연구에서 복잡성(complexity)은 세법이 지나치게 많은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액을 산출하는 계산과정이 복잡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법에 열거된 규정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조세시스템의 복잡성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실험연구에서 Milliron(1985)은 네 가지의 세무신고 상황을 통해 복잡성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복잡성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그러나 공평성과 조세회피기회에 대한 인식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과 관련하여 초기 세무신고의사결정 연구는 납세자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 확실한 세법상황 하에서 그리고 세무정책이 변동되는 상황 하에서 개인의 반응을 검증하였으나, 이 후 연구에서는 세무정책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납세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실험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나 다양한 정책 변수의 불확실성이 실험참여자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Spicer and Thomas 1982 ; Beck et al. 1991 ; Alm et al. 1992d).

Spicer and Thomas(1982)는 세무조사가능성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납세자의 세무신고는 불명확한 세무조사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주장하였다.

Beck et al.(1991)은 불확실한 과세소득, 세율, 가산세율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실험참여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위험선호태도를 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위험중립형 실험참여자의 경우 가산세율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할 때 신고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신고소득은 불확실한 세무조사가능성과 가산세율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산세율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보고소득은 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산세율과 세무조사가능성이 감소할 경우 보고소득은 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한편, Alm et al.(1992d)은 제도적 불확실성(세무조사가능성, 가산세율 및 세율)³²⁾이 조세순응

30) 이는 실증연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결과로 보여 진다. 실증연구(Clotfelter 1983 ; Richardson 2006)나 설문조사(Collins et al. 1992 ; Vogel 1974) 결과, 복잡성은 조세회피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31) 이론적 연구(Beck and Jung 1989b ; Scotchmer and Slemrod 1989)에서도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개인은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보고소득을 증가시키므로써 반응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2) 재정적 변수의 불확실성의 조작은 세무조사가능성의 경우 0.02 혹은 0.06(확실한 집단은 0.04), 세율은 0.10~0.50(확실한 집단은 0.30), 가산세율은 1.0~3.0(확실한 집단은 2)으로 설계하였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재가 제공될 때와 제공되지 않을 때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의 증가는 선행연구와 같이 조세순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참여자가 공공재가 제공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불확실성은 조세순응을 감소시켰다. 연구자들은 재정적 불확실성 수준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조세순응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는 위험한 수단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연구에서 복잡성 및 불확실성 변수는 측정되기 보다는 조작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잡성은 세무과업의 복잡성을 가정하며, 불확실성은 재정적 변수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있다.

(3) 요약 및 한계

세법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복잡성은 조세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Jackson and Milliron 1986 ; Recharadson and Sawyer 2001). 세법의 복잡성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복잡성과 불확실성 변수에 대한 각각의 연구결과도 완전히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Alm et al. 1992d). 다음으로, 세법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험참여자의 판단은 교육, 지식 혹은 경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복잡성의 경우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실험참여자가 실험상황을 복잡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경우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2.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

가. 소득수준

(1) 의미

납세자 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경제상황으로 소득수준을 들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소득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 보고소득을 감소시킨다면 조세회피수준은 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조세순응과의 실험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납세자가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함을 보고하거나(Alm et al. 1992a ; Alm et al. 1992c), 오히려 낮은 소득을 신고한다고 보고하

여(Baldry 1986)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대부분의 이론적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조세회피가 대부분의 범위에 걸쳐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다(Andreoni et al. 1998). 그러나 실증연구나 설문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의 증가는 조세회피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거나(Vogel 1974 ; Dubin et al. 1990 ; Houston and Tran 2001),³³⁾ 중산층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법에 순응적이지만, 저소득 및 고소득의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세법에 비순응적인 현상을 나타남을 보고하여(Mason and Lowry 1981 ; Witte and Woodbury 1985) 전체적으로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보고소득이 높을 때 보다 공격적인 보고 성향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Slemrod et al.(2001)은 저소득 혹은 중간수준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은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할 때, 보고소득 및 보고세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소득의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비용이 증가할 때, 보고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3) 요약 및 한계

소득수준 변수의 조세순응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다른 조세순응 변수와의 상관관계의 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은 세율, 세무조사가능성, 공정성인지, 교육 및 경력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추가로 실험연구에서 소득수준의 조작은 상대적으로 다른 처리변수에 비해 조작의 어려움이 있어, 소득수준의 실질적 효과가 실험결과에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현실에서의 실험참여자의 소득수준과 실험내 실험통화 상의 소득수준 간 괴리로 인해, 소득수준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나. 소득원천

(1) 의미

소득원천(income source)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의 유형이나 성질을 의미한다(Jackson and Milliron 1986). 선행연구에서 소득원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세회피기회가 차별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다.

33) Vogel(1974)은 지난 5년 동안 소득수준의 증가를 보고한 응답자들은 동일 기간 동안 소득수준의 악화를 보고한 응답자에 비해 보다 쉽게 조세회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Houston and Tran(2001)은 낮은 소득의 집단의 응답자들은 수익의 과소신고 및 비용 과대계상에 의해 조세회피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34) Feinstein(1991)도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실증분석을 이용하여 세율과 소득수준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설명하였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소득원천을 실험상에서 다양하게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원천 관련 연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Wallschutzky(1984)는 조세를 회피하는 납세자들과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세회피기회가 높거나 낮은 소득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 무역업 혹은 자영업에서 가장 큰 소득세 회피기회가 존재함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부문과 같이 원천징수를 조건으로 하는 임금 및 급여에 의존하는 납세자의 경우 최소한의 회피기회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실험연구에서는 특정 소득의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음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 소득별로 실험참여자를 분류하였다.

Slemrod et al.(2001)은 실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소득별로 분류하였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높은 조세회피기회 집단으로 그 밖의 소득은 낮은 조세회피기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소득원천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설문연구를 이용해 경제적 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조세회피기회와 순응행위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 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신념 및 과소신고 의도 및 행위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세회피기회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현금수입이 있는 자영업자이거나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하지 않는 현금수입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기회가 높은 집단으로, 그렇지 않으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조세회피기회가 윤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신념은 과소신고 의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3) 요약 및 한계

소득원천이 일반적으로 조세순응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험연구에서는 설문연구에 비해 소득원천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원천(조세회피기회)에 대한 조세순응연구는 단순한 소득 분류 보다는 특정 소득의 다양한 상황이나 공제 항목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비순응기회가 높다고 제시된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에 대한 다양한 실험상황이나 다른 정책변수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Ⅲ.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조세순응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 중 심리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개인적 요인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교육(지식) 및 경험

(1) 의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은 특정 상황 하에서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인구통계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와 조세순응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³⁵⁾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Roberts(1998)는 연령, 경력, 교육, 직업, 직위, 직급 등의 변수가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scher et al.(1992)은 조세순응 모형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소득수준, 소득원천 및 직업으로 구성된 비순응기회와 조세시스템 대한 공평성 인식, 동료에 의한 영향으로 구성된 태도 및 인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순응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가) 연령

연령(age)은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이다. Tittle(1980)은 연령과 조세 회피 간 관계를 생활주기(life cycle) 변화와 세대 간 차이로 설명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납세자는 높은 연령의 납세자 보다 위험을 추구하고, 제재에 덜 민감하며(생활주기 변화), 그들이 살아온 기간과 관계된 사회·심리적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과 유사하게 선행연구에서 연령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Jackson and Milliron 1986 ; Alm et al. 2009).³⁶⁾ 반면 이들 간의 유

35) 납세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는 실험연구과정에서 대부분 측정되며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이용되기에, 실험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6)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연구 뿐 아니라 실증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IRS의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데이터는 가장 혹은 가장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세대주의 경우, 조세회피가 낮게 나타났으며 보다 적은 회피액을 보고하였다(Andreoni et al. 1998).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변수와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Beron et al.(1992)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에 대해서 Richardson and Sawyer(2001)는 연령 변수의 중요성이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조세순응연구에서 납세자의 비순응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령 변수가 다른 다수의 변수와 함께 고려될 때,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 있으며, 다른 순응변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성별

전통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역할과 도덕적인 구속 그리고 보다 보수적인 생활양식에 순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Jackson and Milliron 1986). 이와 같은 성별(gender)이 갖는 특성은 더 높은 조세순응 성향을 가져올 수 있다.

성별에 관한 조세순응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순응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aldly 1987 ; Jackson and Jaouen 1989 ; Torgler 2003a ; Alm et al. 2009). 그러나 Richardson and Sawyer(2001)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순응차이는 여성이 보다 독립적이고, 비전통적 세대에 속할 경우 감소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³⁷⁾

(다) 교육(지식) 및 경험

교육(education) 및 지식(knowledge)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연구에서 교육이나 지식은 네 가지 차원(일반적인 회계 지식 수준, 조세회피기회를 포함하는 지식, 일반적인 교육수준 그리고 특정 세무지식)으로 분류되어 측정될 수 있다(Jackson and Milliron 1986). 이러한 분류의 차이가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인 회계지식 수준, 교육수준 및 특정 세무지식은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조세순응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Eriksen and Fallan 1996), 조세회피기회에 관련된 지식은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정 지식은 경험(experience)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으므로(Barrick 2001)³⁸⁾ 세무신고 경험으로 측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나이, 소득수준, 직업(업무)과 직관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³⁹⁾⁴⁰⁾

의 경우 연령과 조세순응과 정(+)의 관계를, Dubin and Wilde(1988)은 저소득 및 고소득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조세순응과의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37) Hite(1997)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과 교육수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여성에 비해 비순응을 묵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교육수준이 증가할 때, 남성의 순응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ouston and Tran (2001)은 남성보다 여성의 조세회피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38) 유사한 관점에서 Barrick(2001)은 세법지식(code section knowledge)이 세법탐색성과(tax research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세법지식은 세무대학원생과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로 분류하여, 대학원생은 세무전문가에 비해 지식이 낮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세법탐색성과는 주제별 탐색방법(tropical method)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조항별 탐색방법(code section method)에서는 세무전문가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약 및 한계

실험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측정되어 분석된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순응에 어떤 방향으로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세순응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실증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간, 혹은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세순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험결과와 분석과 해석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른 측면에서, Fischer et al.(1992)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다른 변수의 매개를 통해 조세순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변수는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변수를 조절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윤리적 추론(moral reason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Rest and Thoma 1985), 높은 교육수준이 조세순응을 증가시킨다(Kinsney and Grasmick 1993)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2. 심리적 요인(태도 및 인지)

가. 윤리적 태도

(1) 의미

Torgler(2003b)는 조세윤리(tax morale)를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내재동기’로 정의하였다. 납세자들의 조세윤리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관으로 측정되어 검증되거나⁴¹⁾ 납세자 개인의 고유한 윤리적 태도로 한정하여 연구되었다. 다시 말하면, 납세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적 태도는 사회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에서 유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 개인이 지닌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는 실험참여자의 윤리적 태도

39) 경험과 직업(및 업무)과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Sutherland(1949)는 탈세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 범하게 되는 화이트칼라(white-collar) 범죄로 고려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40) 지식, 경험, 능력 등 개인적 변수에 대한 실험연구는 Bonner(2008)이나 최기호와 심태섭(2011)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1) 본 연구의 제Ⅲ장 ‘3. 사회·문화적 요인’의 ‘가. 사회적 가치관’을 참고하십시오.

를 측정하는 단계와 실험참여자의 세무신고행위를 측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조세윤리는 조세회피와는 반대로, 행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측정된다.

정재율(2004)은 납세자의 도덕발달수준(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윤리수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ibbs et al.(1984)이 개발한 SROM 설문지⁴²⁾를 이용하여 피실험자들을 도덕발달수준(높음, 낮음)을 분류하고, 통제원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Rotter(1966)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류(통제 내재론자, 외재론자)하였다. 분석결과 도덕발달과 통제원천은 납세자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세청의 강압적 의사전달(입장표명)은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실험참여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Henderson and Kaplan(2005)은 윤리적 신념이 조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을 검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모형에서의 상황적(contextual) 윤리적 신념⁴³⁾은 개인의 일반적인 윤리적 신념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는 Burns and Kiecker(1995)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실험참여자의 일반적인 윤리적 신념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황적 윤리적 신념은 Reidenbach and Robin(1990)이 제시한 다차원윤리적척도(multidimensional ethical scale)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윤리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조세순응행위는 실험참여자가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으로 예측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윤리적 성향은 직접적으로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평가는 직접적으로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성향은 간접적으로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평가를 통해서만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경제적 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 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신념 및 과소신고 의도와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윤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의 윤리적 행위에 기초하여 윤리적 성향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측정치가 아닌 과소신고 윤리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즉 과소신고에 대한 실험참여자의 윤리적 신념은 과소신고와 관련된 다섯 가지 문항⁴⁴⁾에 대한 동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이 있는,

42) SROM은 암에 걸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헤인즈 딜레마”를 포함한 2개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피험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된 설문지로서, 총 16개의 질문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43) 상황적 윤리적 신념은 다른 사람의 조세순응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반영하며, 조세순응 상황에 대한 개인의 특정한 도덕적 신념을 나타낸다.

44) 다섯 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소신고한 경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과소신고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③ 과소신고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④ 과소신고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⑤ 과소신고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연구자들은 ‘①’과 ‘④’의 경우, 의도적으로 척도를 전환

높은 조세회피기회를 갖는 납세자는 낮은 조세회피기회를 가진 납세자에 비해 조세회피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기회가 높거나 낮은 기회를 갖는 납세자들의 사회적 가치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윤리적 신념은 조세회피 기회(사회적 가치관)와 과소신고를 부분적으로(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약 및 한계

납세자의 윤리적 태도와 조세순응과의 실험연구는 윤리적 태도가 조세순응의도와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윤리적 태도가 조세순응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상황이나 경제적 동기(조세회피로 인해 효익을 얻거나, 조세회피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존재할 때,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실험연구에서 실험참여자의 윤리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설문항목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의 연구는 실험연구 외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설문조사연구 역시 선행하는 변수와 후행하는 변수 및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⁴⁵⁾

나. 공평성(equity)의 인지 : 수평적 · 수직적 · 교환적 공평성(정부서비스, 자발적 기여, 자발적 납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재의 공급)

(1) 의미

공평성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어 정확한 분류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조세순응 관련 연구에서는 공평성을 다음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으로 소득이나 지출 등이 유사한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으로, 소득수준이 다른 납세자와 상대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Dean et al. 1980). 즉 수직적 공평성은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을 의미하며, 흔히 누진세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Lewis 1978 ; Roberts and Hite 1992 ; Roberts et al. 1992). 셋째, 교환적 공평성(exchange equity)은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위의 정의와 유사하게 Jackson and Milliron(1986)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상대적 공평성으로 정의하고, 거래적 공평성(equity of trade)과 더불어 공평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서 거래적 공평성은 교환적 공평성을 의미한다.⁴⁶⁾

하였다).

45) Wenzel(2005)은 설문조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있어 개인의 윤리와 사회적 가치관의 복합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공평성이론(equity theory)(Adams 1965 ; Walster et al. 1973 ; Walster et al. 1978)은 납세자가 불공평한 상황을 인식할 경우,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⁴⁷⁾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자가 전술한 세 가지의 공평성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세무보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우선,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연구에서, Spicer and Becker(1980)는 실험참여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한 집단의 경우 더 낮은 조세순응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한 집단의 경우 더 높은 조세순응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납세자의 ‘재정적 불공평성(fiscal inequity)’의 인식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Moser et al.(1995)은 납세자의 수평적 공평성과 더불어 교환적 공평성의 인지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⁴⁸⁾에서 세율의 변화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행위의 결과가 현장연구 및 실험연구⁴⁹⁾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서 착안되었다. 연구자들은 세율 변화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수평적 공평성과 교환적 공평성의 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⁵⁰⁾ 실험결과 실험참여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경우, 세율이 증가(감소)할 때 보고소득을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낄 경우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수직적 공평성에 관련된 연구이다. 사회학자들은, 납세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지각을 무효화시키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호소가 갖는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Sykes and Matza 1957 ; Minor 1981). 이러한 무효화의 하나인 부에 대한 조세회

46) 공평성을 분류한 연구로, Gerbing(1988)은 설문조사를 통해 공평성을 분류하고 하위항목을 제시하였다. 공평성은 정부와의 교환(exchange with government), 부에 대한 과세(taxes for wealthy), 세율구조(tax rate structure), 전반적인 공평성(overall fairness), 자신의 이해관계(self-interest)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47) Richardson(2006)은 45개 국가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에서 조세시스템에 대한 공평성 인식이 조세회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48) 경제학 이론에서 세무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세율이 증가(감소)할 때, 보고소득이 증가(감소)함을 제시하였다.

49) 대부분의 현장연구(field study)(Clotfelter 1983 ; Poterba 1987)와 실험연구(Baldry 1987 ; Benjamin and Maital 1985 ; Collins and Plumlee 1991)는 세율이 증가(감소)할 때, 보고소득이 감소(증가)함을 제시하였다.

50) 연구자들은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은 모든 실험상황에서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영향력은 통제하였다.

피(taxes avoided by wealthy)는 비순응에 대한 원인이나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조세순응연구에서 자주 인용되어 왔다(Jackson and Milliron 1986 ; Roth et al. 1989). Kinsey et al.(1991)도 역시 부는 세금으로 너무 적게 지불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te(1997)는 전화설문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수직적 공평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이 조작된 집단의 실험참여자에게는 부에 대해 납부되는 세금수준(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몇 개의 문장을 들려주었고, 통제집단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의 측정은 과세대상인 복권이 당첨된 상황에서 복권 주관 기관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자발적 소득신고수준(1점~9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추가로 연구자들은 각 집단에서 연구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참여자의 사전적 조세순응태도를 측정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부에 대한 세금은 일부 실험참여자의 조세순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순응은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다른 납세자가 무임승차를 할 유인이 있을지라도, 납세자 개개인이 납세액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 조세순응은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인 교환적 공평성은 이와 같이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교환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사이의 공평성에 대한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 교환적 공평성은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 납세자들의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공공재(public goods)의 제공 등과 연결되어 제시되어 왔으며,⁵¹⁾ 일반적으로 조세순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자발적 기여와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납부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재는 비선형 방식으로 실험참여자의 조세순응을 증가시키고 있음이 발견되었다(Becker et al 1987 ; Alm et al. 1992a ; Alm et al. 1992b).

Becker et al.(1987)은 실험참여자에게 공공부문이전계획(public sector transfer scheme)을 제시하고, 실험참여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고 믿는 경우, 개개인의 조세순응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Alm et al.(1992a)은 공공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여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더미변수로, 두 번째는 공공재 공급의 개별적인 분배를 측정하는 상호작용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재에 대한 상관관

51) 교환적 공평성 연구에서 정부서비스와 공공재는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차이를 둔 경우도 있다. Kim et al.(2005)은 실험에서 교환적 공평성을 조작할 때, 모호한 공공재(예를 들면, 공원 건설 혹은 고속도로 유지) 보다는 명확한 금전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금전적인 지급이 (교환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경제적 효과의 측정치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의 연구는 금전적 지급을 연구에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공공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Alm et al. 1995).

계계수는 약한 부(-)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공공재의 분배에 대한 상관관계계수는 높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자의 경우 실험참여자가 기여(contribution)없이 공공재를 누리기를 시도하는 무임승차행위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후자의 경우 실험참여자가 공공재에 대해 다른 사람들 역시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조세순응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공공재의 효익(benefit)을 인식할 경우, 더 높은 조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Alm et al.(1992b)은 일부 납세자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조세순응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받게 되는 공공재의 총량이 증가하면, 순응률은 증가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Spicer and Lundtstedt(1978)와 Smith(1992)는 납세자가 그들이 부담한 세금이 적절히 소비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경우,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정부가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납세자의 선호와 일치하게 소비한다면, 납세자들의 순응행위는 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납세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경우, 세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Alm et al.(1995)은 자발적 공공재 연구에서 기부 메커니즘(contribution mechanism)(Bagnoli and McKee 1991 ; Davis and Holt 1993)을 이용하여 공공재를 설계하였다. 공공재가 공급되는 세션은 그룹에 속한 실험참여자의 모든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두 배를 곱한 후, 다시 실험참여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공재가 공급되는 세션은 공급되지 않는 세션에 비해 조세순응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선행연구(Becker et al. 1987 ; Alm et al. 1992a ; Alm et al. 1992b)와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유사하게 Torgler(2003a)는 공공재⁵²⁾의 확대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는데, 보다 많은 공공재의 혜택을 얻고 있는 납세자(get more favourable exchanges)들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세금의 납부에 대해 덜 부정적이고, 탈세에 대한 더 높은 도덕적 비용(moral cost)을 가지며,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공공재의 공급이 세무보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면, Kim et al.(2005)은 연구자들은 추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세율증가에 납세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즉, 일관되지 않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전통적 경제이론과 공평성 이론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세율이 증가할 때 추가적인 납세액에 대한 교환으로 받는 정부서비스를 교환적 공평성의 증가로 인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보고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험에서 정부서비스는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는 집단(GS)과 제공되지 않는 집단(NGS)의 집단간 요인으로 설계하였다. GS집단은 실험참여자가 실제로 낸 세금의 50%를 환급받게 되며, NGS 집단은 실험참여자가 낸 세금에 대한 교

52) 연구자는 이를 ‘재정적 교환(fiscal exchange)’으로 표기하였다.

환으로 받게 되는 부분은 없음을 공지하였다. 연구결과, 세율의 증가는 보고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정부서비스는 보고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세율과 정부서비스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지와 납부성실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박춘래(2000)는 소득원천별로 느끼는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 정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근로소득, 전문직 소득, 일반제조업 소득 3가지 소득 및 세무자료에 대한 가상적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이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소득원천에 대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공평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근로소득자 보다는 전문직 종사자나 일반제조업 종사자들이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공평한 것으로 인식함을 제시하였다.

3. 사회·문화적 요인⁵³⁾

가. 사회적 가치관(social norm) : 사회적·문화적·국가적 차이

(1) 의미

Elster(1989)는 ‘사회적 가치관’을 타인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하며,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비승인 되어 유지되는 행태로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따른다면, 개개인의 행위는 이를 따르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행위 또한 이를 따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은 개개인이 직면해 있는 제도, 이러한 제도를 향한 개개인의 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선택에 대한 개개인의 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Torgler 2003a ; Gërkhani and Schram 2006),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속한 다양한 제도 및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의 차이로 확대될 수 있다.

Alm et al.(1995)은 조세순응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을 정의함에 있어, 조세순응과 사회적 가치관 간에는 명확한 잠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조세시스템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조세순응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위의 차별적인 관념 즉, 사회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⁵⁴⁾

53)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적 권고 외에도 동료집단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내에서 동료집단의 영향의 설계가 납세자간 정보의 교환과 관련되어, 제II장 ‘1. 조세제도적 요인’의 ‘나. 납세 관련 정보’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각주 20> 참조).

54) 이와 같이 조세순응이 조세순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 및 의무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하고 있다(Westat Inc 1980).

조세순응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관의 개념은 개개인이 조세순응이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믿는다면 납세에 순응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비순응이 지배하고 있다면, 개개인에게도 순응의 사회적 가치관은 소멸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기존 연구는 개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본질적인 동기, 즉 조세윤리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구속으로 작용하며, 국가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사회적 제도에 의한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납세자의 가치기준이 영향을 받는다면, 납세윤리는 납세자의 조세순응과 다른 사람의 행동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기존연구는 몇 개의 국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Alm et al.(1995)의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는 두 개의 국가(스페인, 미국)에서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하였다.⁵⁵⁾ 연구자들은 다른 문화, 제도 및 사회적 배경에 처한 실험참여자를 이용함으로써 조세순응에 있어 사회적 가치관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두 나라의 순응수준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조작변수(fiscal parameters)의 변화에 대해 응답하는 순응률의 변동에서도 두 국가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두 나라의 순응의사결정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두 나라간 조세윤리(tax morality) 혹은 순응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Frey et al. 1984)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Cummings et al.(2004)은 미국, 보스와나(Botswana) 및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세순응행위에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실험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⁵⁶⁾ 연구결과 조세순응행위와 납세윤리간의 관찰된 차이점은 조세행정의 공정성, 재정적 교환(fiscal exchange)의 공정성 인지 및 각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실험연구결과가 동일한 국가에서 납세윤리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재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을 확인하였다.

55) Alm et al.(1995)은 실험설계에서 실험참여자가 속한 국가의 차이 외에 대조집단(baseline sessions)과 세무조사가능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집단의 행위에서 차이가 관찰될 경우, 현재 스페인과 미국의 문화에서 나타난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56) 연구자들은 이상의 세 국가에 대한 연구가 조세순응연구에서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료의 결핍을 보완해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하라의 남아프리카대륙에서 보스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비교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나 편향(noises and biases)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세순응연구에서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실험적 증거들을 통해, 조세순응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측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요약 및 한계

사회적 가치관과 조세순응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연구는 한 사회의 가치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조세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에 속하는 개인의 조세순응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는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의 실험을 수행하여 사회적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다른 국가에 속한 실험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사회적 가치관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특정 국가에서 조세정책이 유사할 수 있으나, 완전히 같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에 노출되어 있는 실험참여자들이 판단한 세무보고의사결정은 사회적 가치관 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Cummings et al.(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험연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실험연구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다. Alm and Torgler(2006) 역시 스페인과 미국의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Alm et al.(1995)의 연구를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정보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재검증하였는데, 추가변수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다변량분석결과, 미국이 스페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납세윤리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나. 윤리적 권고

(1) 의미

최근 조세순응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윤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Andreoni et al. 1998 ; Cummings et al. 2004 ; Erard and Feinstein 1994a ; Erard and Feinstein 1994b ; Torgler 2003a ; Torgler 2004). 이와 같이 윤리적 감정이나 윤리적 의무가 조세순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납세자에게 제시되는 윤리적 권고(moral suasion)는 납세자의 윤리적 감정 및 윤리적 의무와 조세순응 혹은 이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연구주제 및 변수측정

Schwartz and Orleans(1967)는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을 통해 도의적 호소(conscience appeal)와 처벌 위협(sanction threat)이 세무관련 순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도의적 호소가 처벌 위협에 비해 더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잠재적 순응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Hite(1997)는 실험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메시지와 납세자의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메시지는 실험참여자인 실제 납세자들에게 전화음성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 현행 세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의 변화를 의회에 제기할 수 있음, 비순응이 사회적 가치와 전체 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메시지는 일부 실험참여자에게 조세순응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유사한 관점에서, McGraw and Scholz(1991)는 조세순응에 윤리적 권고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윤리적 권고는 실험참여자가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Schwartz and Orleans(1967)와는 달리 윤리적 권고가 실험참여자의 신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었다. Blumenthal et al.(2001)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McGraw and Scholz(1991)의 연구는 Schwartz and Orleans(1967)의 연구(1개월)에 비해 실험조작과 세무신고 기간 사이의 긴 시간차(3개월 이상)로 인해 발생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추가로 Blumenthal et al.(2001)은 미네소타(Minnesota)주의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윤리적 설득과 제재가 자발적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두 실험집단에 속한 납세자에게 다른 문구가 적힌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가로 우편물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우편물에는 세수(revenue)가 미네소타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설명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체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 우편물에는 “일부 납세자가 사소한 실수로 신고를 누락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누락한 소수의 납세자가 대부분의 미납세액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였다. 실험에서 조세순응행위의 측정은 보고소득과 납부세액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우편물을 받은 납세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더 높은 평균순응률을 제시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우편물 역시 보고소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윤리적인 호소나 제재의 효과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 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 문구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에게 윤리적 권고가 제시되었는데, Torgler(2003a)는 Blumenthal et al.(2001)이 윤리적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이용한 우편물의 긴 문구는 연구자들이, 제시된 문구에 대한, 실험참여자들의 반응의 크기를 통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보다 짧고 명료한 문구를 이용하였다.⁵⁷⁾ 연구자들은 도덕적 권고가 조세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57) 연구자들은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실험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실험참여자들에게 “우리는 당신(실험참여자)들 중 누가 불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적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성실한 신고는 인지하며 우리가 요청한 세금 전액을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였다.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orgler(2004)은 실험에서 제시되는 문구⁵⁸⁾ 뿐 아니라 윤리적 권고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지적하였는데, 주(state) 단위의 과세당국(Blumenthal et al. 2001)의 권고 보다는 소도시(local)의 과세당국의 권고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스위스(Switzerland)의 소도시에서 도덕적 권고가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윤리적 권고가 조작된 처리집단의 납세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규범적 호소가 담긴 공문을 받게 된다. 연구결과, 윤리적 권고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처리집단에 속한 납세자들은 통제집단에 속한 납세자에 비해 정시납세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요약 및 한계

선행연구결과는 정부의 납세자에 대한 윤리적 권고가 세무보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선행연구와 다른 설계를 이용하였기에 발생될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설계시 윤리적 권고의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키는가 문제이다. 이는 연구자가 의도한 윤리적 권고의 내용과 실험참여자가 이러한 규범적 내용을 어떻게 해석 하는가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결과에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내에서 윤리적 권고가 의도하는 상황 및 내용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험참여자에 대해 이러한 처리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manipulation check)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은 납세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경제적 요인 및 비경제적 요인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부록>의 표와 같다.

58) 연구자들은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너무 길지 않은 적절한 분량의 공문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도록 유도하였다.

IV.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정리된 납세자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험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연구에서 분석될 수 있는 조세순응 관련 연구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세제당국이나 세정당국)이 실시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세순응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여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는 조세순응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정책 변수(예를 들면 세율, 세무조사가능성, 가산세율 등)에만 집중되어 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이러한 변수 이외에 보다 다양한 정책변수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세무조사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의 제재정책이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비율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다양한 방식이나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납세자들의 신고소득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주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최근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작위추출방법이나 성실도분석방법⁵⁹⁾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는데,⁶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납세자의 신고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납세자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실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세율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율변수, 특히 세율의 크기가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과세당국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존연구는 세무조사비율 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은 실제로 0.3%미만의 낮은 확률을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기존 실험연구는 현실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의 세무조사비율을 실험상황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세무조사정책은 세무조사 자체 보다

59) 국세청 보도자료(『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2009.10.9,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2009.9.24)를 참고.

60) 국세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후 법인세 자진신고규모가 급감한 62개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후엔 한동안 세무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이진우·정 옥(2010.1.31) “세무조사 후 신고세액 줄였다 난 낭패”, 매일경제 참고).

는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순응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타 정보의 공개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나 또는 그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의 차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과세당국의 정보 공개 정책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전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정보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과세당국 정책의 적절성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최근 제재 정책과 더불어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보상 정책에 대한 연구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주로 제재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보상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과세당국에서 보상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상정책과 관련된 연구에서 혜택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그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금전적인 혜택 이외에 비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상정책의 효과를 파악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에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경제적 요인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용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추가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성실납세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 선정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납세윤리의 권고 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윤리경영 및 납세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납세자의 윤리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데,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납세자 개인의 윤리적 성향 혹은 외부의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가 여부를 검증하였다. 물론 현재까지 관련 선행연구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추가연구에서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연구나 혹은 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즉, 단일기간에 대한 연구가 아닌 다기간(multi-period)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적 권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리적 권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해 윤리적 권고와 실제 행위시점간의 시간차이를 지정한 Blumenthal et al.(2001)의 해석은 제시한 추가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앞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나, 여러 요인간의 효과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 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납세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간의 연구주제로, 처벌과 윤리에 대한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Gneezy and Rustichini(2000)은 처벌과 윤리에 대한 실험을 통해,⁶¹⁾ 처벌은 사회규범이나 윤리에 따라서 규제되는 행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처벌이라는 수단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윤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처벌의 강화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 조세순응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순응연구에서도 납세자를 기존의 경제적 인간에 한정된 적발이나 처벌의 주제를 넘어서, 규범이나 윤리 등의 태도와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요인의 연구주제로, 교육(지식이나 경험)이라는 인구통계적 특성이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조절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제시될 수 있다. 혹은 비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로서, 납세자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와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의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통합하는 연구는 조절효과나 매개효과 뿐 아니라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실험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정 개인이 처한 요인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다른 수많은 요인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행위 수준을 희석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순응변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연구의 설계 시 선행연구에서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된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의사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 Gneezy and Rustichini(2000)은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맡아 돌보는 데이케어(day care)센터에서 아이를 시간보다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벌금이 도입된 이후 예상과 달리 지각은 증가했고, 벌금부과를 중지한 이후에도 지각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제재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윤리에 따라 스스로 규제 되던 행동을 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느끼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별로 이루어진 기존연구의 연구주제 및 변수 측정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정리를 통하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한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실험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 위하여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여러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과세당국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험연구를 정리하였다.

우선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조세 제도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우선 조세 제도적 요인에서는 첫째, 세금에 대한 부담(세율), 적발(세무조사가능성,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적발확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 처벌(가산세율) 등과 관련된 제재 변수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둘째,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내용 혹은 공식적·비공식적 정보가 공개될 때 납세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었으며, 셋째, 제재와 더불어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넷째, 조세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⁶²⁾ 다음으로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에서는 납세자가 처해 있는 개별적 조세회피기회를 의미하는 소득원천과 소득수준 관련 연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윤리적 태도와 같은 태도와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공평성 인지와 조세순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62) 이와 같은 조세 제도적 요인에 대한 실험연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다양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는 사후적인 데이터만을 이용하거나 분석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나 관련 선정방식을 공개한 정책이 도입된 이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심태섭 2011, 배수진과 심태섭 2011), 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이 공지하는 평균신고소득률이 납세자들의 소득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차길녕과 도상호 2006) 등은 과세당국이 해당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은 사회·문화·국가 간 차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적 권고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 변수 중 실제 과세당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연구에서는 많이 분석되지 않았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나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나, 정보내용의 확대되거나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이 다를 경우, 납세자들의 반응을 검증하는 연구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최근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과의 비교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처벌과 윤리, 혹은 처벌과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태도 등 여러 경제적·비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비교하거나, 그 상호작용의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변수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거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세순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의 납세의사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보도자료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2009. 9.24.
- _____. 보도자료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2009.10.9.
- 김형준·현진권. 2004.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연구보고서 04-10. 한국조세연구원.
- 박춘래. 2000. “소득원천별 공정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6권 : 85-105.
- 배수진·심태섭. 2011.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 437-480.
- 심태섭. 2004. “세무대리업무 실무종사자의 성실세무신고 유도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9권 제3호 : 227-251.
- _____. 2005.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4권 제4호 : 1001-1022.
- _____. 2011. “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 133-163.
- 이진우·정 욱. 2010. 1. 31. “세무조사 후 신고세액 줄였다간 낭패”. 매일경제.
- 정재율. 2004. “개인적 특성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 173-209.
- 차길녕·도상호. 2006. “평균신고소득률의 제시가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 최기호·심태섭. 2011.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회계 연구동향”. 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 177-231.
- Adams, J.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 267-299.
- Alm, J. 1991.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axpayer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66 : 577-593.
- _____, M. B. Cronshaw., and M. McKee. 1993. Tax compliance with endogenous audit selection rules. *KYKLOS* 46 (1) : 27-45.
- _____, B. R. Jackson., and M. McKee. 1992a.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 (1) : 107-114.
- _____, _____, and _____. 1992c. Deterrence and beyond : Toward a kinder, gentler IRS. In Slemrod-Joel. (Eds.), *Why People Pay Taxes :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311-329.
- _____, _____, and _____. 2009. Getting the word out : Enforcem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compliance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 392-402.

- _____, and S. Jacobson. 2007. Using laboratory experiments in public economics. *National Tax Journal* 60 (1) : 129 – 152.
- _____, G. H. McClelland., and W. D. Schulze. 1992b.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 (1) : 21 – 38.
- _____, and M. McKee. 2006. Audit certainty, audit productivity, and taxpayer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59 (4) : 801 – 816.
- _____, I. Sanchez., and A. De Juan. 1995.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in tax compliance. *KYKLOS* 48 : 3 – 18.
- _____, and B. Torgler. 2006. Culture differences and tax moral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 224 – 246.
- Allingham, M., and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4) : 323 – 338.
- Andreoni, J., B. Erard., and J., Feinstein. 1998.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2) : 818 – 860.
- Anderson, S. E., and A. D. Cuccia. 2000. A closer examination of th economic incentives created by tax return preparer penalti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2 (1) : 55 – 77.
- Antonides, G. 1991. Psychology in Economics and Business, Jluwer academic Publishers.
- Bagnoli, M., and M. McKee. 1991. Voluntary contribution games : Efficient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Economic Inquiry* 29 (2) : 351 – 366.
- Baldry, J. 1987. Income tax evasion and the tax schedule : Some experimental results. *Public Finance* 42 : 357 – 383.
- Barrick, J. A. 2001. The effect of code section knowledge on tax – research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2) : 20 – 34.
- Beck, P. J., J. S. Davis., and W. Jung. 1991. Experimental evidence on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66 (3) : 535 – 558.
- _____, _____, and _____. 1992. Experimental evidence on an economic model of taxpayer aggression under strategic and nonstrategic audi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1) : 86 – 112.
- _____, and W. Jung. 1989a. Taxpayers' reporting decisions and auditing under information asymmetry. *The Accounting Review* 64 (3) : 468 – 487.
- _____, and _____. 1989b. An economic model of taxpayer compliance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9(Spring) : 1 – 27.
- Becker, G. S. 1968. Cl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2) : 169 – 217.
- Becker, W., H. J. Buchner., and S. Sleeking. 1987. The impact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s on

-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4 (2) : 243 – 252.
- Benjamini, Y., and Maital, S. 1985. Optimal tax evasion and optimal tax evasion policy : Behavioral aspects. In Wenig, A., and Gaertner, W. (Eds.), *The Economics of the Shadow Economy*. Springer Verlag.
- Blanthorne, C., and S. Kaplan. 2008. An egocentric model of the relations among the opportunity to underreport, social norms, ethical beliefs, and underreporting behavior.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33 (7 – 8) : 684 – 703.
- Blumenthal, M., Christian, C., Slemrod, J. 2001. Do Normative Appeals Affect Tax Compliance?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National Tax Journal* 54 (1) : 125 – 138.
- Bonner, S. 2008,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 Prentice – Hall.
- Boylan, S. J., and G. B. Sprinkle. 200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compliance : The effect of earned vs. endowed incom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1) : 75 – 90.
- Bosco, L. and L. Mittone. 1997. Tax evasion and moral constraints : Some experimental evidence. *KYKLOS* 50 (3) : 297 – 324.
- Burns, J. O., and P. Kiecker. 1995. Tax practitioner ethic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organizational consequen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Fall) : 20 – 49.
- Callahan, C. M., E. A. Gabriel, and B. J. Sainty. 2006. A review and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economics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25 : 59 – 126.
- Clotfelter, C. T. 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August) : 363 – 373.
- Collins, J. H., and R. D. Plumlee. 1991.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 : The effect of audit schemes. *The Accounting Review* 66 (3) : 559 – 576.
- Cowell, F. A. 1990. *Cheating the Govern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uccia, A. D. 1994.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s on Paid Preparers :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 (1) : 41 – 66.
- Cummings, R. G., J. Martinez – Vazquez, M. McKee, and B. Torgler. 2004. Effects of Culture on tax compliance : A cross check of experimental and survey evidence. Working paper.
- Davis, D. D., and C. A. Holt. 1993. *Experimental Economic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an, P., T. Keenan, and F. Kenney. 1980. Taxpayers' attitudes to income tax evasion : An empirical study. *British Tax Review* 25 : 28 – 44.
- Dubin, J. A. 2004. Criminal investigation enforcement activities and taxpayer noncomplianc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Working Paper.

- _____, M. J. Graetz, and L. L. Wilde. 1990. The effect of audit rate on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1977 – 1986. *National Tax Journal* 43 (4) : 395 – 409.
- _____, and L. L. Wilde.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41 (March) : 61 – 74.
- Elster, J. 1989. Social norms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 (4) : 99 – 117.
- Erard, B., and J. S. Feinstein. 1994a. Honesty and Evasion in the Tax Compliance Game.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 1 – 20.
- _____, and _____. 1994b. The Role of Moral Sentiments and Audit Perceptions in Tax Compliance. *Public Finance* 49 : 70 – 89.
- Eriksen, K., and L. Fallan. 1996. Tax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axation : A report on a quasi – 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 : 387 – 402.
- Falkinger, J., and H. Walther. 1991. Reward versus penalties :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19 (1) : 67 – 79.
- Feld, L. P., B. S. Frey, and B. Torgler. 2006. Rewarding honest taxpayers? Evidence on the impact of rewards from field experiments. Working paper.
- Feinstein, J. S. 1991. An econometric analysis of income tax evasion and its detection.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22 (1) : 14 – 35
- Fischer, C. M., M. Wartick, and M. Mark. 1992.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1 : 1 – 46.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1978.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 (1) : 107 – 116.
- Frey, B. S. 1997. *Not Just for Money. An Economic Theory of Personal Motivation*. Cheltenham, UK : Edward Elgar Publishing.
- Gerbing, M. 1988. An empirical study of taxpayer perceptions of fairnes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TX.
- Gerxhani, K., and A. Schram. 2006. Tax evasion and the source of inco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3) : 402 – 422.
- Gneezy, U., and A. Rustichini. 2000. A fine is a price. *Journal of Legal Studies* 29 : 1 – 17
- Hasseldine, J. 2000. Using persuasive communications to increase tax compliance : What experimental research has (and has not) told US. *Australian Tax Forum* 15 (3) : 227 – 224.
- _____, P. Hite and M. Toumi. 2007. Persuasive communications : Tax compliance enforcement strategies for sole proprietor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7 (1) : 39 – 72.
- Hendersen B. C., and S. E. Kaplan. 2005.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Ethics in Tax Compliance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7 (1) : 39 – 72.

- Hite, P. A. 1997. An investigation of moral suasion and vertical equity arguments on intended taxpayer noncompliance. *LAW & POLICY* 19 (1) : 1 – 22
- Houston, J., and A. Tran. 2001. A survey of tax evasion using the randomized response technique. *Advances in Taxation* 13 : 69 – 94.
- Internal Revenue Service(IRS). 1978. *A Dictionary of Compliance Facto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Assistant Commissioner Research Division.
- Jackson, B. R., and P. R. Jaouen. 1989. Influencing taxpayer compliance through sanction threat or appeals to conscience. *Advances in Taxation* 2 : 131 – 147.
- _____, and V.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 125 – 165.
- Kim, C. K., J. H. Evans III, and D. V. Moser. 2005. Economic and equity effects on tax reporting decision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30 : 609 – 625.
- Kinsey, K. A., H. G. Grasmick, and K. W. Smith. 1991. Framing justice : Taxpayer evaluations of personal tax burdens. *Law & Society Review* 25 : 845 – 73.
- _____, _____, and _____. 1993. Did the tax reform act of 1986 improve compliance? Three studies of pre – and post – TRA compliance attitudes. *Law & Policy* 15 : 293 – 325.
- Le Grand, J. 2003. *Motivation, Agency, and Public Policy. Of Knights and Knaves, Pawns and Quee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A. 1982. *The Psychology of Taxa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 Libby, R., R. Bloomfield, and M. Nelson. 2002. Experimental research in financial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7 (8) : 775 – 810.
- Mason, R., and H. Lowry. 1981. An Estimate of Income Tax Evasion in Oregon. Survey Research Center. Oregon State University.
- McGraw, K. and J. T. Scholz. 1991. Appeals to civic virtue versus attention to self – interest : Effects on tax compliance. *Law and Society Review* 25 (3) : 471 – 498.
- Milliron, V, C. 1985.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 (2) : 794 – 816.
- Minor, W. W. 1981.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 A re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October) : 295 – 318.
- Moser, D. V., J. H. Evans III, and C. K. Kim. 1995.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0 (4) : 619 – 634.
- Poterba, J. 1987. Tax evasion and capital gains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 77(May) : 234 – 239.
- Outslay, E. 1995. The state of Behavioral tax research : an editor's perspective. In *Behavioral Tax Research : Prospects and Judgment calls*, edited by J. S. Davis. Sarasota, FL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Quiggin, J. 1993. *Generalized Expected Utility Theory : The Rank Dependent Model*.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MA.
- Reidenbach, R. E., and D. P. Robin.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scale for improving evaluations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August) : 639 – 653.
- Rest, J. R., and S. J. Thoma. 1985. Relation of moral judgment development to formal edu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July) : 709 – 714.
- Richardson, G. 2006. Determinants of tax evasion : A cross – country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 150 – 169.
- Richardson, M., and A. J. Sawyer. 2001. A taxonomy of the tax compliance literature : Further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Australian Tax Forum* 16 : 137 – 320.
- Roberts, M. L. 1998. Tax accountants' Judgment/Decision – Making research :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1) : 78 – 121.
- _____, and P. Hite. 1992. Who should pay, and how much?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 _____, and C. Bradley. 1992. Understanding progressivity :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using abstract and concrete fram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 Roth, J. A., J. T. Scholz, and A. D. White. (eds.) 1989. *Taxpayer Compliance I*. Philadelphia : Univ. of Pennsylvania Press.
- Schwartz, R. D., and S. Orleans. 1967. On legal sanct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34 : 274 – 300.
- Scotchmer, S. and J. Slemrod. 1989. Randomness in tax enforc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8 : 17 – 32.
- Slemrod, J., M. Blumenthal, and C. Christian. 2001. Taxpayer response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an audit :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 (3) 455 – 483.
- Skykes, G. M., and D. Matza. 1957.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 664 – 670.
- Smith, K. W. 1992. Reciprocity and fairness : Positive incentives for tax compliance. In : Slemrod, J. (Ed.), *Why People Pay Taxes. Tax Compliance and Enforcemen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223 – 258.
- Spicer, M. W., and L. A. Becker. 1980.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3 (2) : 171 – 175.
- _____, and R. E. Hero. 1985. Tax evasion and heuristics : A research no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6 (2) : 263 – 267.
- _____, and S. B. Lundstedt. 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 (2) : 295 – 304.

- _____, and J. E. Thomas. 1982. Audit probability and the tax evasion deci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 : 241 – 245.
- Sprinkle, G. B. 2003. Perspectives on experimental research in managerial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8 : 287 – 318.
- Sutherland, E. 1949. *White Collar Crime*. New York : Dryden.
- Tauchen, H V., A. D. Witte and K. J. Bero. 1989. Tax compliance : An investigation using individual TCMP dat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3078.
- Tittle, C.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 Praeger.
- Torgler, B. 2001. What do we know about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48 (3) : 395 – 419.
- _____. 2002. Speaking to theorists and searching for facts :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in experiment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6 (5) : 657 – 684.
- _____. 2003a. Beyond punishment : A tax compliance experiment with taxpayers in Costa Rica. *Revista de Análisis Económico* 18 (1) : 27 – 56.
- _____. 2003b. The tax morale and institution. working paper.
- Trochim, W. M. K., and J. P. Donnelly. 2007. *Research Methods Knowledge Base*. 3rd Edition. Thomson.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27 : 499 – 513.
- Wallschutzky, I. G. 1984. Possible cause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 : 371.384.
- Walster, E., G. Walster, and E. Berscheid. 1978. *Equity : Theory & Research*. Boston, MA : Allyn and Bacon Inc.
- _____, E. Berscheid. and G. W. Walster. 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 151 – 176.
- Wartick, M. L., S. A. Madeo, and C. C. Vines. 1999. Reward dominance in tax – reporting experiments : The role of context.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 (1) : 20 – 31.
- Webley, P. 1987. Audit probabilities and tax evasion in a business simulation. *Economics Letters* 25 : 267 – 270.
- Wenzel, M. 2005. Motivation or rationalization? Causal relations between ethics, norms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 : 491 – 508
- Westat Inc. 1980. *Individual Income Tax Compliance Factors Study Qualitative Research*. Prepared f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4 February.
- Witte, A. D., and D. F. Woodbury.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38 (March) : 1 – 14.

A Review of Behavioral Tax Compliance Research on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using Experiment

Su-Jin Pae* · Tae-Sup Shim**

—〈Abstract〉—

In the tax compliance research, the experimental method ha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method. This study presents various factors affecting taxpayers' tax reporting decisions that have been suggested from previous 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 using experimental method, by classifying into two categories of economic factors and non-economic factors. And then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subjects, designs and results of studies related to two categories of factor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on the tax compliance research using experiment.

The economic factors in this study mostly mean the economic incentive-related variables of affecting after tax disposable incomes, and include tax institutional factors(sanction, tax administration and tax-related information, rewards and tax system) and individual economic-environmental factors(income level and income source). On the other hand, the non-economic factors in this paper include personal factors(demographic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factors(attitude and cognition),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social norm, moral suasion).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by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are as follows ;

First, fiscal variables mainly included in economic variables are found to be studied by focusing on particular factors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ly, studies are required on the policies which were not analyzed in precedent studies but tax authority has adopted currently, or may adopt in future. For example, research on audit scheme, taxpayers' responses when information level or disclosure method is different, or changes of taxpayers' tax reporting decisions after audit. These studies may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ax authority's policies on audit schemes, audit scheme disclosure and post control of audit.

Second, recent studies emphasize importance of non-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ax morale can help explain the tax compliance. If the moral suasions influence tax compliance, the research on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 are required.

* Full-time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Third, studies on action effects of inter-economic factors, inter-non-economic factors, and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non-economic factors are required.

Finally,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ables having meaningful effects to tax compliance suggested in previous paper, further studies on tax payment decisions on a wider viewpoint are required.

〈Key words〉 Tax reporting decision, Experimental studies, Tax compliance, Behavioral tax accounting research

〈부록〉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I. 경제적 요인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조세 제도적	제재 금에 대한 부담	세율	Friedland et al.	1978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남
			Baldry	1987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남
			Benjamini and Maital	1985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남
			Alm et al.	1992a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남
			Alm et al.	1995	세율이 증가할 때 보고소득이 증가함.
			Moser et al.	1995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수평적 공정성과 교환적 공정성의 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함.
		세율, 위험선호도	Beck et al.	1991	납세자를 위험선호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위험 회피형인 납세자인 경우, 세율이 증가하면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Boylan and Spinkle	2001	납세자들의 소득획득방법(증여소득, 근로소득)에 따라 분류하여 세율변화와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분석. 세율이 증가할 때, 증여소득을 획득한 경우 근로소득을 획득한 경우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세무보고성향이 나타남.
		세무조사가가능성	Friedland et al.	1978	세무조사가가능성이 증가하면 납세자들의 보고소득이 증가함

요인	분 류	처리번호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조세 제도적	제재 적발	세무조사가능성	Beck et al.	1991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면 납세자들의 보고소득이 증가함
			Alm et al.	1992a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면 납세자들의 보고소득이 증가함
			Alm et al.	1993	세무조사가능성이 증가하면 납세자들의 보고소득이 증가함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Collins and Plumlee	1991	무작위추출방식 보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방식인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이나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이 과소신고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Alm et al.	1993	무작위추출방식과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에 세무조사결과가 미래와 과거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부차기세무조사방식, 조건부전기세무조사방식을 추가로 가정함. 분석결과,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조건부전기세무조사방식, 조건부차기세무조사방식, 무작위추출방식의 순서로 조세준응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Beck et al.	1992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과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결과,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과 같은 체계적인 세무조사방식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함.
			심태섭	2008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과 무작위추출방식을 실험에 이용한 결과,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하에서 무작위추출방식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조세 제도적	제 제	적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201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선정방식의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에 비해 무작위추출방식에서 높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냄.
			세무조사적발확률	2006	세무조사적발확률이 낮은 경우(65%) 높은 경우(100%)에 비해 약간 높은 순응률을 보고함.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점 (세무조사 전 대상자 선정)	2006	세무신고 전에 세무조사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 실험 참여자의 순응률은 감소함.
			세무조사 후 조세순응	1985	세무조사를 받은 실험참여자들은 이후 세무신고에서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처벌		1987	세무조사 경험은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더 높은 조세순응을 나타냄.
			Friedland et al.	1978	가산세율의 증가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높은 가산세율이 세무조사비율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과소신고 억제효과가 나타남.
			Beck et al.	1991	가산세율이 증가될 경우, 보고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Alm et al.	1992a	가산세율이 증가될 경우, 보고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Alm et al.	1992b	가산세율이 증가될 경우, 보고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조세 제도적	세무행정 및 세무 관련 정보 공개	세무조사 및 다른 납세자에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	Spicer and Thomas	1982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Alm et al.	1992c	세무조사정보를 제공할 때, 공격적 보고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Slemrod et al.	2001	미네소타주의 과세당국이 실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능성 증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신고소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세무조사 및 다른 납세자에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	김형준과 현진권	2004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조사비용이나 탈세에 대한 정보 모두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제시함.
			차길녕과 도상호	2006	평균신고소득률의 제시가 납세자의 신고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부가가치세를 정상신고(과소신고)한 경우 평균신고소득률을 제시하면 더 낮은(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무조사대상 여부의 공개	Alm and McKee	2006	세무조사대상임을 사전에 공지한 실험참여자의 조세순응은 증가한 반면, 세무조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한 실험참여자의 조세순응은 감소함.
		보호하고 일반적 정보, 구체적 정보의 제공	Hasseldine et al.	2007	납세자에게 모호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가산세 등 제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고소득이 증가함.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조세 제도적	세무조사 및 다른 납세자에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신태섭	2011	세무조사대상자선정기준(무작위추출방식, 최저금액신 고자추출방식)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신고소득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의 경우 신고소득률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수진과 신태섭	2011	선정방식의 공개는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 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선정방식 별로 분석한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고소득수준별 추출방식인 경우 유의함.		
	보상	공식적· 비공식적 정보	Alm et al.	2009	세무당국이 공표한 공식적인 발표를 의미하는 공식적 정보와 납세자(실험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 통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정보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과세당국이 공표한 정보 및 실험참여자 간 의사소통으로 획득한 정보의 효과는 과세당국이 세무 신고 전에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		
					Alm et al.	1992c	금전적 보상으로 복권참여기회의 제공하거나, 일정 금 액을 보상하거나 공공채를 가경하고, 비금전적 보상으 로는 세무조사가능성의 감소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의 수단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
							Torgler

요인	분 류	처리번호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조세 제도적	보상	금전적 · 비금전적 혜택	금전적 보상(세액공제),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서면제), 세무조서	2005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금전적 보상(세액공제)이 제공되는 경우,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서면제)이 제공되는 경우, 혜택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 혜택 정책이 독립적으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서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과소신고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남.
			금전적 보상(세액공제),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서면제)	2011	성실납세자 혜택의 조세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러나 보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금전적 보상(세액공제)과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서면제)이 제공될 때 유의적으로 조세순응을 유도하며, 비금전적 보상보다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될 경우, 더 높은 조세순응을 유도함을 제시.
	조세 시스템	복잡성	복잡성, 공평성, 조세회피 기회	1985	복잡성이 증가하면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세소득의 불확실성, 세무조서가능성, 가산세율	1991	불확실한 세무조서가능성과 가산세율의 상호작용이 신고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산세율과 세무조서가능성이 증가(감소)할 경우, 보고소득은 보다 더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적 불확실성(세무조서가능성, 가산세율, 세율), 공공재의 제공	1992d	실험참여자에게 공공재가 제공되지 않을(제공될) 경우, 불확실성의 증가는 조세순응을 증가(감소)시킴.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개인의 경제 상황	소득수준	소득수준	Alm et al.	1992a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보고함.
			Alm et al.	1992c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보고함.
			Baldry	1986	소득이 높을수록, 더 낮은 소득을 보고함.
	소득원천	소득수준, 세무조사가가능성	Slemrod et al.	2001	저소득 혹은 중간수준 소득(고소득)의 납세자들은 세무조사가가능성이 증가할 때, 조세준응이 증가(감소)함을 제시함.
		사업소득(높은 조세회피기회) 그 외의 소득 (낮은 조세회피기회)	Slemrod et al.	2001	사업소득(높은 조세회피기회)이 그 외의 소득(낮은 조세회피기회)에 비해 조세준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주) 모든 처리변수에 대한 종속변수는 세무신고의사결정(신고소득, 조세준응)임.

II. 비경제적 요인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1)}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개인적	인구통계적 특성 ^{주2)}	연령	Title	1980	연령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조세순응적임.
			Alm et al.	2009	납세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이 증가함.
		성별	Baldly	1987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세순응적.
			Jackson and Jaouen	198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세순응적.
			Torgler	2003a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세순응적.
			Alm et al.	200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세순응적.
심리적	태도	교육(지식) 및 경험	Hite	1997	성별과 교육수준 간 상호작용효과를 검증.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은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여성에 비해 비순응을 목인하는 경향이 나타남. 반대로 교육수준이 증가할 때 남성의 순응도는 증가함.
		도덕발달수준(윤리수준), 통제원천(성격변수)	정재을	2004	도덕발달수준(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세자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국세청의 강압적 의사전달(임장표명)은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피실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
		윤리적 신념(성향), 윤리적 평가	Henderson and Kaplan	2005	윤리적 신념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여항에 대한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모형을 제시. 윤리적 신념(성향)은 직접적으로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평가는 직접적으로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침. 마지막으로 윤리적 성향은 간접적으로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침.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1)}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심리적	태도	조세회피기회, 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신념	Blanthorne and Kaplan	2008	
	윤리적 태도				
		수직적 공정성	Hite	1997	
		수평적 공정성	Spicer and Becker	1980	
	인지	공평성 : 수평적 · 수직적 · 교환적 공평성 (정부서비스, 공공재)	수평적 공평성, 교환적 공평성, 세율	Moser et al.	1995
			Becker et al.	1987	
			Alm et al.	1992a	
			조세회피기회, 사회적가치관, 윤리적 신념 및 과소신고 의도와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이 있는 높은 조세회피기회를 갖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를 비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적음. 조세회피기회가 높거나 낮은 납세자들의 사회적 가치관은 유사함. 추가로 윤리적 신념은 조세회피기회(사회적 가치관)와 과소신고를 부분적으로(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진화설문을 이용한 실험에서, 부(wealth)에 대한 세금이 조세순응을 증가시킴을 제시함.		
			다른 사람 보다 더 높은 (낮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한 실험집단의 경우, 더 낮은(높은) 조세순응이 나타남.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경우, 세율이 증가(감소)할 때, 보고소득을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실험참여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고 믿는 경우, 조세순응이 감소함.		
			공공재를 두 가지(공공재의 존재여부, 공공재의 개별적 분배를 측정하는 상호작용변수)로 측정. 연구자들은 공공재가 존재할 때 조세순응은 감소하며(무임승차행위로 인해), 실험참여자가 공공재에 대해 다른 사람 역시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조세순응이 증가함을 주장.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1)}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심리적 인지	공평성 : 수평적· 수직적· 교환적 공평성 (정부서비스, 공공재)	교환적 공평성 (정부서비스, 공공재)	Alm et al.	1995	공공재가 제공되는 세션은 공급되지 않는 세션에 비해 조세순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Torgler	2003a	공공재의 확대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Kim et al.	2005	추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추가적인 정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세율증가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을 검증. 세율의 증가는 보고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정부서비스는 보고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세율과 정부 서비스와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박춘래	2000	근로소득, 전문직 소득, 일반제조업 소득 3가지 소득 및 세무자료에 대한 가상적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소득원천에 대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공평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 근로소득자 보다는 전문직 종사자나 일반제조업 종사자들이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공평한 것으로 인식을 제시.
사회·문화적 사회적 문화적	사회·문화 · 국가 간 차이	사회적 가치관 (미국, 스페인)	Alm et al.	1995	사회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국가(미국, 스페인)에서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세순응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
		사회적 가치관 (미국, 보스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Cummings et al.	2004	실험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 보스와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세순응행위와 납세율 간의 차이점이 나타남을 제시함.

요인	분 류	처리변수 ^{주1)}	주요실험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사회·윤리적 문화적 권고		도의적 호소, 처벌 위험	Schwartz and Orleans	1967	현장실험에서, 처벌위험에 비해 도의적 호소가 세무관련 순응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함.
		윤리적 메시지	Hite	1997	전화응답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된 윤리적 메시지가 일부 실험참여자에게 조세순응효과가 있음을 제시함.
		사회적 책임의 호소	McGraw and Scholz	1991	윤리적 권고(실험참여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비디오를 시청하게 함)가 실험참여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윤리적 설득과 제재	Blumenthal et al.	2001	미네소타주의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두 가지 형태(윤리적 설득, 제재)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납세자의 자발적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윤리적 호소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함.
		(짧고 명료한 문장의) 윤리적 권고	Torgler	2003a	도덕적 권고의 문장형태(짧고 명료한 형태)를 조정하여, 도덕적 권고와 조세순응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함.
		소도시의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권고	Torgler	2004	도덕적 권고가 이루어지는 수준(소도시의 과세당국)을 조정하여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도덕적 권고의 조세순응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주1) 모든 처리변수는 세무신고의사결정(신고소득, 조세순응)임.

주2) 개인적 요인 중 인구통계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은 실험 내에서 측정되었다.